

학 교 법 인 광 암 학 원 이사회 회의록

2022년도 제11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 인	2 인
재적인원	8 인	2 인
참석인원	5 인	2 인

1. 회 의 일 시 : 2022년 10월 26일 15:00-16:00 (회의 통지일 2022년 10월 18일)

2. 회 의 장 소 : 학교법인 사무처 회의실

3. 임원 출석현황

◎ 참석임원

- 이사 (5 인) : 이성효, 윤재익, 황현, 이상용, 이철구
- 감사 (2 인) : 심재형, 김창해

◎ 불참임원

- 이사 (3 인) : 이사장 이용훈, 최인각, 박찬호

4. 안 건

- 1) 의안 제1호 : 학교법인 광암학원 인사규정 변경 (안)
- 2) 의안 제2호 : 단위학교 교원 임용 (안)
- 3) 의안 제3호 : 단위학교 추가경정 예산 승인 (안)
- 4) 의안 제4호 : 2023년 신입교원 채용계획 승인 (안)

5. 회의 내용

◎ 개회선언

(윤재익 이사)

의장인 이용훈 이사장이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 상태로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설명하다.

(회의 진행을 위해 임시의장으로 이성효 이사가 호선되다.)

(참석이사 전원 동의)

(임시의장 이성효 이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하다. (7인 참석 확인)

(임시의장 이성효 이사)

전차 회의록 낭독을 요청하다. (윤재익 이사의 전차 회의록 낭독)

(임시의장 이성효 이사)

전차 회의록 내용의 수용 여부를 확인하다. (모든 이사 : 동의 없음 확인)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윤재익	이철구	황현

의안 제1호 : 학교법인 광암학원 인사규정 변경 (안)

◎ 제안 · 심의 · 의결

(임시의장 이성효 이사)

의안 제1호 학교법인 광암학원 인사규정 변경 (안)을 상정하고 윤재익 이사에게 제안 설명하게 하다.

(윤재익 이사)

학교법인 광암학원 정관 변경(9차 이사회, 22.08.24.)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하위 규정인 광암학원 교직원 인사규정 중 교직원 징계 규정을 변경된 정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불임의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불임, 징계 규정 변경(안) 및 징계양정기준)

(황현 이사)

윤재익 이사가 제안한 원안에 동의하다.

(이철구 이사)

황현 이사의 의견에 재청하다.

(임시의장 이성효 이사)

황현, 이철구 이사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참석이사 전원 찬성)

(임시의장 이성효 이사)

이사 신부님들의 찬반의사 표시를 재차 확인하고 의안 제1호인 학교법인 광암학원 인사규정 변경 (안)이 불임의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고 후속 업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다.

(제안 윤재익 이사, 동의 황현 이사, 재청 이철구 이사 /찬성 5인 반대 0인)

의안 제2호 : 단위학교 교원 임용 (안)

◎ 제안 · 심의 · 의결

(임시의장 이성효 이사)

의안 제2호 단위학교 교원 임용 (안)을 상정하고 윤재익 이사에게 제안 설명하게 하다.

(윤재익 이사)

수원가톨릭대학교의 기정만, 정진만 신부의 승진임용 제청(조교수→부교수)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

(황현 이사)

수원가톨릭대학교 교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윤재익 이사가 제안한 원안에 동의하다.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윤재익	이철구	황현

(이상용 이사)

황현 이사의 의견에 재청하다.

(임시의장 이성효 이사)

황현, 이상용 이사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참석이사 전원 찬성)

(임시의장 이성효 이사)

이사 신부님들의 찬반의사 표시를 재차 확인하고 의안 제2호인 단위학교 교원 임용 (안)이 다음의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고 후속 업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다.

학 교 명	직	성 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비고
수원가톨릭 대학교	부교수	기정만	72.04.10.	2022.11.30.~2029.02.28.	승진임용
	부교수	정진만	76.12.30.	2022.11.30.~2029.02.28.	승진임용

(제안 윤재익 이사, 동의 황현 이사, 재청 이상용 이사 / 찬성 5인, 반대 0인)

의안 제3호 : 단위학교 추가경정 예산 승인 (안)

◎ 제안 · 심의 · 의결

(임시의장 이성효 이사)

의안 제3호 단위학교 추가경정 예산 승인 (안)을 상정하고 윤재익 이사에게 제안 설명하게 하다.

(윤재익 이사)

효명고등학교에서 제출한 2022학년도 교비회계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1) 효명고등학교의 2022학년도 학교비회계 1차 추경예산의 세입·세출 총액을 본 예산에서 1,136,111,000 원 증액한 8,412,898,000원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

(임시의장 이성효 이사)

단위학교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에 대한 감사 검토의견을 묻다.

(김창해 감사)

금번 추경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효명고등학교 예산서 세입부의 목적사업비 및 재정결함지원비, 현장학습비 추가 편성. 세출부의 교직원 보수, 급식운영비, 학교운영비, 교육시설 개선공사비 의 증액, 재무활동비는 감소 편성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예산서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설명하다.

(황현 이사)

윤재익 이사가 제안한 원안에 동의하다.

(이상용 이사)

황현 이사의 의견에 재청하다.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윤재익	이재우	황현

(임시의장 이성효 이사)

황현, 이상용 이사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참석이사 전원 찬성)

(임시의장 이성효 이사)

이사 신부님들의 찬반의사 표시를 재차 확인하고 의안 제3호인 단위학교 추가경정 예산 승인 (안)이 다음의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고 후속 업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다.

☐ 단위학교 교비회계 2022학년도 추경예산 승인

(단위: 원)

구분	기정예산액	경정예산액	비교증감	비고
효명고등학교	7,276,787,000	8,412,898,000	1,136,111,000	제1차 추경

(제안 윤재익 이사, 동의 황현 이사, 재청 이상용 이사 / 찬성 5인, 반대 0인)

의안 제4호 : 2023학년 신입교원 채용계획 승인 (안)

◎ 제안 · 심의 · 의결

(임시의장 이성효 이사)

의안 제4호 2023학년 신입교원 채용계획 승인 (안)을 상정하고 윤재익 이사에게 제안 설명하게 하다.

(윤재익 이사)

학교법인 광암학원의 신입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법인에서 불임의 채용계획안을 작성하여 각 학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심의 결과 채용인원 및 채용절차에 대하여 이상이 없으며 법인의 채용계획에 동의하는 것임을 설명하다. 이에 불임의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 (불임, 2023학년 신입교원 채용계획안)

(황현 이사)

윤재익 이사가 제안한 원안에 동의하다.

(이철구 이사)

황현 이사의 의견에 재청하다.

(임시의장 이성효 이사)

황현, 이철구 이사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참석이사 전원 찬성)

(임시의장 이성효 이사)

이사 신부님들의 찬반의사 표시를 재차 확인하고 의안 제4호인 2023학년 신입교원 채용계획 승인 (안)이 불임의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고 후속 업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다.

(제안 윤재익 이사, 동의 황현 이사, 재청 이철구 이사 / 찬성 5인, 반대 0인)

◎ 기타 안건

(임시의장 이성효 이사)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윤재익	이철구	황현

금번 이사회에서 의결한 안건 중 2023년도 신입교원 채용계획(안)에는 본 법인의 신입교원 선발기준과 방법, 선발위원회의 구성과 시험 준비위원의 선정, 평가방법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외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내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7항에 의거 비공개 하는 것을 제안하고 다른 이사들의 찬반 여부를 묻다.
(참석이사 전원 찬성)

◎ 폐회선언

의장은 회의록 간서명자로 윤재익, 황현, 이철구 이사를 추천하고 동의 여부를 묻다.
(모든 참석 이사 동의)

(임시의장 이성효 이사)

사립학교법 제18조 2항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에 출석 임원들의 자필서명과 간서명 대표자로 선정된 임원들에게 간서명을 요청하고 동의 여부를 묻다. (모든 이사 동의)

의장은 상정 안건의 의결 내용을 재차 확인하고 폐회할 것을 선언하다.

(이상 결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 낭독하고 각 이사와 함께 기명날인하다.)

2022. 10. 26.

학교법인 광암학원 이 사	이 성 효	이성효
이 사	윤 재 익	윤재익
이 사	황 현	황현
이 사	이 상 용	이상용
이 사	이 철 구	이철구
감 사	심 재 형	심재형
감 사	김 창 해	김창해

학교법인 광암학원 교직원 징계 규정 변경(안)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제2조 (설치) ①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광암학원 정관 제59조에 의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교법인에 둔다. ② 교직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학교법인 이사 또는 교직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단위학교장(대학제외)은 교직원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이때 학교장이 임원인 경우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당연직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설치 및 구성) ① 광암학원 정관 제59조에 의하여 설치 및 구성하며 학교법인에 둔다. ② (삭제)	광암학원 정관 제59조 개정사항 반영
	부 칙 1.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윤재익	이철우	황현

징 계 양 정 기 준(1)

번호	구 분	비 위 내 용	잘못의 정도가 많고 재단과 학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편으로 판단		잘못의 정도에 정상참작을 고려할 만하고 재단과 학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비교적 작은 편으로 판단	
			본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	본인의 책임이 비교적 크다	본인의 책임이 비교적 크다	본인의 책임이 비교적 작다
1	성실 의무 위반	가. 근무태만	파면	해임~강등	정직 ~ 감봉	견책~주의
		나. 근무성적불량	파면 ~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주의
		다. 직장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라. 친절, 공정 의무 위반	파면 ~ 해임	해임 ~ 정직	감봉	견책~주의
2	신의 의무 위반	가. 비밀엄수 위반	파면	해임~강등	정직	감봉
		나. 청렴의무 위반	파면	해임~강등	정직	감봉 ~ 견책
		다.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파면 ~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주의
3	질서 의무 위반	가. 지시 명령 불복종	파면 ~ 해임	해임 ~ 정직	감봉	견책~주의
		나. 집단행위금지 위반	파면 ~ 해임	해임 ~ 정직	감봉	견책~주의
		다. 품위유지 위반	파면 ~ 해임	해임 ~ 정직	감봉	견책~주의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윤재익	이찬기	황현

(별표-광암학원 징계양정기준)

징 계 양 정 기 준(3)

(제2조 관계)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 실이거나, 비 위의 도가 경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 실이거나, 비 위의 도가 경 하고 중과실 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 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 태만 또는 회 계질서 문란 나. 기 타	파 면	해 임	강등-감봉	견 책
2. 복종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강등-감봉	견 책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4. 친절 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7.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8. 영리업무 및 격직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8의2. 정치운동 금지위반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9. 집단행위 금지위반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간서명	이사	이사	이사
	윤대익	이재민	황현